



협 약 서

본 협약서는 강북구청 직원들의 마음건강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 “강북구 보건소”와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 상담센터”가 심리상담 제공 등을 상호 협력·지원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이 협약서는 강북구청 직원 마음건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트레스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준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센터와 강북구 보건소가 상호간 긴밀한 협조 하에 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센터와 강북구 보건소가 협약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강북구 보건소는 협약사항을 대상자에게 적극 안내 및 홍보하여야 하며, 서울사이버 대학교 심리상담센터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전담 운영하여야 한다.

나. 기 간: 2016. 6. 21 ~ 2016. 12. 31.

다. 대 상

- 강북구 구청 직원 중 마음건강 스크리닝 고위험군 등

라. 내 용

마음건강 스크리닝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1회 ~ 15회

제3조(상담절차)

가. 강북구 보건소는 구청 직원에 대한 마음건강 스크리닝을 실시 후 고위험군에 대한 대상자를 의뢰 및 개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센터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전담 진행한다.

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센터는 상담에 의뢰된 내담자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를 강북구 보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보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센터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의뢰된 내담자와의 심리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를 보호해야 할 일차적인 의무와 윤리적 책임이 있다.

제5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은 상호 협의하여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상호협의)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7조(효력발생)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센터와 강북구보건소는 본 협약과 관련된 제반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협력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효력은 협약체결일로 부터 발생한다.

제8조(유효기간 및 효력정지)

가. 협약의 유효기간은 최초 협약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하며 해지하지 않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나. 본 협약서는 종료를 희망하는 기관에서 30일전 서면 통지를 통해 종료 가능하다.

제9조(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을 준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날인하여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센터와 강북구보건소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06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소장 이 인 영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센터
센터장 옥 정